



정책자료

## ‘2001 가스안전관리 및 유통구조개선사업 자금운용관리지침’

● 산업자원부 ●

산업자원부는 4백78억1천만원을 지원하는 「2001 가스안전관리 및 유통구조개선사업 자금운용관리지침」을 발표했다.

###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1-39호

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로부터 지원되는 가스안전관리 및 유통구조개선사업의 자금운용 관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## 2001년도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 자금운용관리지침

### ▣ 목적

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융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▣ 적용범위

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의 개선을 지원함에 있어서 관련규정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 ▣ 용어의 정의

가. 융자대상기관 : 한국가스안전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.)

나. 융자추천기관 : 한국LP가스공업협회 (LP가스협회), 한국LP가스집단공급업 협동조합(집단공급조합), 한국도시가스 협회(도시가스협회), 한국가스전문검사

기관협회(검사기관협회) 등으로 자금대출을 추천하는 기관, 이하“( )”내의 용어로 칭한다.

다. 융자 :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가 융자대상기관에 자금을 유통하여 주는 것.

라. 대여 : 융자대상기관이 대출취급기관에게 자금을 유통하여 주는 것.

마. 대출 : 대출취급기관이 자금의 실수요자에게 자금을 유통하여 주는 것.

바. 대출취급기관 : 융자대상기관으로부터 융자금을 대여 받아 실수요자에게 자금을 유통하여주는 금융기관으로서 공사 사장이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.

사. 계속사업 : 융자가 최초 실행된 당해 년도에 기성이 완료되지 못하여 2개년도 이상에 걸쳐 자금소요가 발생하는 동일 사업.

### ▣ 예산의집행

가. 산업자원부는 확정된 자금배정계획의 금액 범위 내에서 필요시 월별 자금집행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사

### 〈사업별 지원내역〉

(단위 : 백만원)

사업명	세부사업명	지원금액	자금구분	지원대상자
가스유통구조 개선 사업	○ 충전시설 이전 및 개선			
	○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			
	○ 설치 및 탱크로리 구입			
	○ 충전소 용기 재검사	9,713	시설	충전사업자
	○ 용기 구입 등	2,000	운전	판매사업자
LPG공급방식 개선 사업	○ 집단공급시설 설치 및 구입	500	시설	집단공급사업자
	소계	12,213		
도시가스시설 개선 사업	○ 체적판매시설 설치	9,000	시설	사용자(건물소유주 포함) 및 판매사업자 등 공급자
	○ 노후배관 교체 및 시설개선	21,897	시설	도시가스 사업자
	○ 가스안전 관련 기기 개발	4,000	시설	가스관련기기 제조사업자
검사기관시설 개선 사업	소계	25,897		
	○ 검사시설 및 장비 구입	700	시설	전문검사기관
합	계	47,810		

## ▣ 지원조건

### 가. 사업별 지원조건

사업명	세부사업명	추천기관	지원범위 및 한도	대출조건 (거치/상환)	금리 (대여/대출)
가스유통 구조개선 사 업	○ 충전시설 이전 및 개선 - 노후배관교체 등 시설 개선, 자동충전기 등 시설개체 · 이전확충시설(부대비 포함)	○ LP가스 협회	○ 소요자금 90%이내 - 10억원 한도	3/5	4.25/5.25
	○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 설치 및 탱크로리 구입 - 충전소 저장탱크, 탱크 로리 및 운반차량 구입	○ LP가스 협회	○ 소요자금 90%이내 - 3억원 한도	3/5	4.25/5.25
	○ 충전소 용기 재검사	○ LP가스 협회	○ 소요자금 90%이내 - 5천만원 한도	3/5	4.25/5.25
	○ 용기구입 - 판매사업자의 용기 구입등 운전자금	○ 공사 (지사포함)	○ 전년도 매출액 또는 추정매출액의 25% 범위내 5천만원 한도	1/3	4.25/5.25
	○ 집단공급시설 설치 - 공동주택 등의 집단공급 시설 설치(매입 포함) - 주거용 사용자시설에 대한 휴즈록, 가스누출자동차단 장치 설치 - 공동주택 등의 집단공급 시설의 탱크로리 구입	○ 집단공급 조합	○ 소요자금 90%이내 - 3억원 한도  ○ 소요자금 90%이내  ○ 소요자금 90%이내 - 2억원 한도	3/5	4.25/5.25
LPG공급 방식개선 사업	○ 체적판매시설 설치 - 배관, 계량기 등 체적판매 시설	○ 공사 (지사포함)	○ 용기 사용시 - 주택용 : 35만원 - 비주택용 : 65만원  ○ 저장탱크(소형포함) 사용시 - 저장설비 : 용량별 산정(별표1) - 소비시설 : 개소당 20만원 - 운전자금 : 개소당 5만원 한도	3/5 (사용자 0/5)	4.25/5.25

사업명	세부사업명	추천기관	지원범위 및 한도	대출조건 (거치/상환)	금리 (대여/대출)
도시가스 시설개선 사업	○ 노후배관교체 및 시설개선 - LNG전용설비전환(LNG 탱크로리·저장탱크·기화 기등 제조시설 구입 및 설치 - 공급관 및 단지내 사용자 배관 교체 및 전기방식개체·신설 - 정압기 이설 및 원격감시 장치 등 안전시설 개체·신설 - 배관망도 전산화·자체안전 검사장비 및 기타 안전성 향상시설·장비의 구입·보수 비용 - 주거용 사용자시설에 대한 휴즈콕크, 가스누출자동차단 장치 설치	○ 도시가스 협회	○ 소요자금 90%이내 - 60억원 한도	3/5	4.25/5.25
	○ 가스안전관련기기의 개발 (밸브, 계기, 정압기, 연소기류 マイ콤메타, 과류차단밸브, 휴즈콕 등)	○ 공사 (본사)	○ 소요자금 90%이내 - 5억원 한도	3/5	4.25/5.25
검사기관 시설개선 사업	○ 검사 시설 및 장비 개체	○ 검사기관 협회	○ 소요자금 90%이내 - 3억원 한도	3/5	4.25/5.25

\* 매출액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때에는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액으로 한다.

에 통보한다.

나. 공사는 통보된 월별 자금집행계획 범위  
내에서 자금을 집행하여야 한다.

#### ▣ 지원사업

가. 사업별 지원내역<앞페이지 표참조>  
나. 산업자원부장관은 자금의 수요 및 집행상  
황을 고려하여 사업별 지원금액을 변경하  
여 공고할 수 있다.

#### ▣ 지원절차

가.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응자신청에 필요  
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에 추천  
신청서를 제출한다.  
나. 추천기관은 이 지침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

대출검토 및 추천에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  
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 
이에 따라 대출추천신청서를 검토하여 대  
출추천서를 발급하되, 대출 실행후 30일  
이내에 자금사용자로부터 자금사용에 대  
한 증빙을 징구(판매사업자의 용기구입 등  
을 위한 운전자금은 제외)하여 사후관리하  
여야 한다.

단, 대출실행후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대  
출 받은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추천기  
관의 승인으로 3개월까지 증빙제출을 연  
기할 수 있다.  
다. 대출취급기관은 지원대상사업자의 대출추  
천서를 확인한 후 금융기관의 대출절차에  
따라 대출한다.

## ▣ 대출추천, 승인 및 지급범위 등

- 가. 추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추천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출추천을 하여야 한다.
- 나. 추천기관은 대출추천신청사업의 총 소요 자금 중 당해년도에 집행(인출)될 소요자금만 추천하여야 하며, 계속사업은 추천년도를 포함하여 3년 이내에서만 인정되어 당해년도 추천금액 및 차년도 이후 소요금액을 추천서에 연도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차년도 이후 지원금액은 지원해당년도에 조성되는 지원자금에서 우선 추천한다.
- 다. 사업별 년간추천총액은 대출 포기율을 감안하여 적정범위내에서 초과 추천할 수 있다.
- 라. 대출취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승인을 하여야 하며, 대출 승인일은 당해년도 말을 초과할 수 있다.
- 마. 대출취급기관이 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시설의 설치 또는 검사장비 구입등을 확인하여, 그 확인된 기성고에 따라 자금을 지급하되, 대출추천금액의 30%(체적판매시설 설치를 위한 경우 50%)범위내에서 계약금 또는 선급금을 기성고로 추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체적판매시설 설치의 경우에는 공사에서 발급한 안전검사(점검) 확인서(별표 3서식)를 기성고로 추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, 추정된 기성고는 “12의 가”에 의해 징구된 자금사용내역서에 의해 확정된다.
- 바. 대출취급기관이 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시설공급자의 예금계좌를 경유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특별히 증빙되었을 경우에는 차주에게 지급할 수 있다.
- 사. 대출취급기관은 이 지침에 의한 자금의 대출

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.

- 아. 사업자가 추천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출추천이 자동 취소된다.
- 자. 사업자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최초 인출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대출추천 및 대출승인이 자동 취소된다.

## ▣ 대여

- 가. 대출취급기관은 지원대상자의 대출신청을 받아 대여일 7일전까지 공사에 자금 대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이 경우 공사는 대여요청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- 나. 공사는 전항의 요청에 따라 지원조건에서 정한 한도액 범위내에서 대여하여야 한다.
- 다. 대여는 담보 없이 하고, 대여일은 공사와 대출취급기관간 협의하여 정한다.

## ▣ 대출

대출취급기관은 공사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을 본 지침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지원대상에게 대출하여야 한다.

## ▣ 대출금의 사후 관리

- 가. 대출취급기관은 대출한 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한 용도관리를 행하여야 하며, 대출실행 후 1개월이내에 자금사용자로부터 자금사용에 대한 증빙을 징구(판매사업자의 용기구입 등을 위한 운전자금은 제외)하여야 한다. 다만, 정당한 사유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취급기관의 승인으로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공사는 대출취급기관, 추천기관 및

- 대출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.
- 나. 대출취급기관은 대출금이 용도외 목적에 사용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상환 기간전이라도 유용된 대출원리금을 회수하여 공사에 상환하여야 한다.
- 다. 공사는 대출금을 용도외 목적에 사용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향후 이 지침에 의한 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.
- 라. 대출취급기관은 “나”의 규정에 의한 대출 원리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대출금 유용시부터 회수일까지 유용된 대출금에 대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운용요령에서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익월 15일까지 징수하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.
- 마. 대출취급기관은 대출금상환내역을 “11”의 규정에 의한 상환 해당 월(3,6,9,12월)의

7일까지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.

- 바. 공사 및 대출취급기관은 이 지침외에 대출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## ▣ 융자금의 이월사용

매회계년도의 융자예산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지원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업체별 지원한도 금액은 대출승인 또는 기성이 이루어진 연도에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.

- 1)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았으나,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인출하지 못한 것을 공사의 확인으로 대출하는 경우.
- 2) 이 공고 “8. 마”의 규정에 의한 기성고가회계연도 종료 2개월 전에 이루어졌으나,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대출승인을 받지 못한 것을 확인한 추천기관의 추천으로 대출하는 경우

## 〈부 칙〉

1. 이 지침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2. 이 공고 “8의 마”에 의한 별표 3서식은 공사에서 발급한 “검사필증 발급확인서” 및 “요청점검 확인서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.

[별표1] 소형저장탱크 또는 저장탱크를 이용한 체적판매시설 설치시 저장설비 지원한도

(단위 : 만원 / 1기당)

저장능력	지원한도
○ 1톤 미만	430
○ 1톤이상 2톤 미만	520
○ 2톤 이상 3톤 미만	960
○ 3톤 이상	1,360